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09년 4월 6일 김환동위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모법인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이 삭제되고, 「발명진흥법」 제10조와 제15조로 변경되고, 기타 법령의 변경에 따라 조례의 법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변경 :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나. 발명진흥법·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

1)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 → 「발명진흥법」 제10조와 제15조(안 제1조)

2)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 → 「실용신안법」 제13조제2항(안 제10조)

다. 불필요한 조항의 내용 정비(안 제2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4.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김환동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특허법,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리로 법령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모순을 정비하고, 둘째,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⁴⁾에 대한 직무발명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원예작물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토록 하였으며 셋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품종보호권은 97년 12월 31일 시행된 국내의 종자산업법에 따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적 재산권의 일종.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작목 육성자는 채소의 경우 20년, 과수와 임목은 25년간 해당 품종의 상업적인 이용에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는 2000년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과 배 복숭아 오이 등 4개 작목 27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설정했다.